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97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3045호)	임이자	2024.8.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 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4610호)	김소희	2024.10.8.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 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5737호)	안호영	2024.11.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6525호)	김주영	2024.12.16.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3.)

기후·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6891호)	박해철	2024.12.24.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6962호)	박해철	2024.12.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3.)
기후·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제2207022호)	박해철	2024.12.27.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 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 •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하고,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표준시나

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제9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 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별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안 제16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래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 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 하여 금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수행 업무, 자격 취소,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함(안 제23조, 안 제23조의2·제23조의3 신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의"를 "장, 관계 전문가 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 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으로, "적응대책"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 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를 "공공기관의" 로 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 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개발사 업"을 각각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를 "수"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를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 하게 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

- 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 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 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오의 생산 등) ①・② (현행과 오의 생산 등) ① • ② (생 략)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 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 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 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 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

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 대책 -----

- --- 활용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 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이하 이 조에서"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 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 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 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신 설>

<u>공공기관의</u>
<u> </u>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

제1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 업을 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 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으로 정한다.
제17조 <u>(기후·기후변화 감시 및</u>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
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u>연구·개발 및 전문인</u>
<u>력 양성사업</u>
②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u>T</u>

- 1. ~ 8. (생 략)
- ④·⑤ (생 략)
- ⑥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 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 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 8.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 진을 위해 ----.
-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 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 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 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 분석 · 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 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 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신 설>

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

 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

 장을 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 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 런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 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 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지정취소
-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